

2022년

#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안내

- ❖ 개업(법인, 중개인포함)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(§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)
- ❖ 2022.12.31.까지 교육이수를 완료해야 하며, 연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**1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가 부과됩니다.

## 교육기관

한국공인중개사협회 ·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

## 이수기간

교육대상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

## 교육신청

한국공인중개사협회([www.kar.or.kr](http://www.kar.or.kr))접속 → 사이버교육원  
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([www.lak.or.kr](http://www.lak.or.kr))접속 → 교육센터

## 교육시간

12시간~16시간 (사이버교육 6~8시간 이하 + 집합교육 6~8시간 이하)

❖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 없이 사이버 교육으로만 대체하여 운영중이며,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## 교육비

4만원(사이버 교육로만 운영 시)

❖ 코로나19 완화로 '사이버+집합교육' 운영 시 교육비 인상될 수 있음

## 문의사항

- ❖ 행정업무 관련 문의 : 부산광역시 토지정보과(051-888-2614)
- ❖ 교육 신청 및 강의 관련 문의 : 한국공인중개사협회(02-2015-9800), 부산광역시지부(051-803-8060)  
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(02-597-4210), 부산광역시지부(051-867-4210)

## 기타 공인중개사 교육

- ❖ 실무교육 :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신청하려는 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(고용신고일) 신청일 전 1년 이내 이수
- ❖ 직무교육 :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이수

 부산광역시 토지정보과

\* 교육 방법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\*